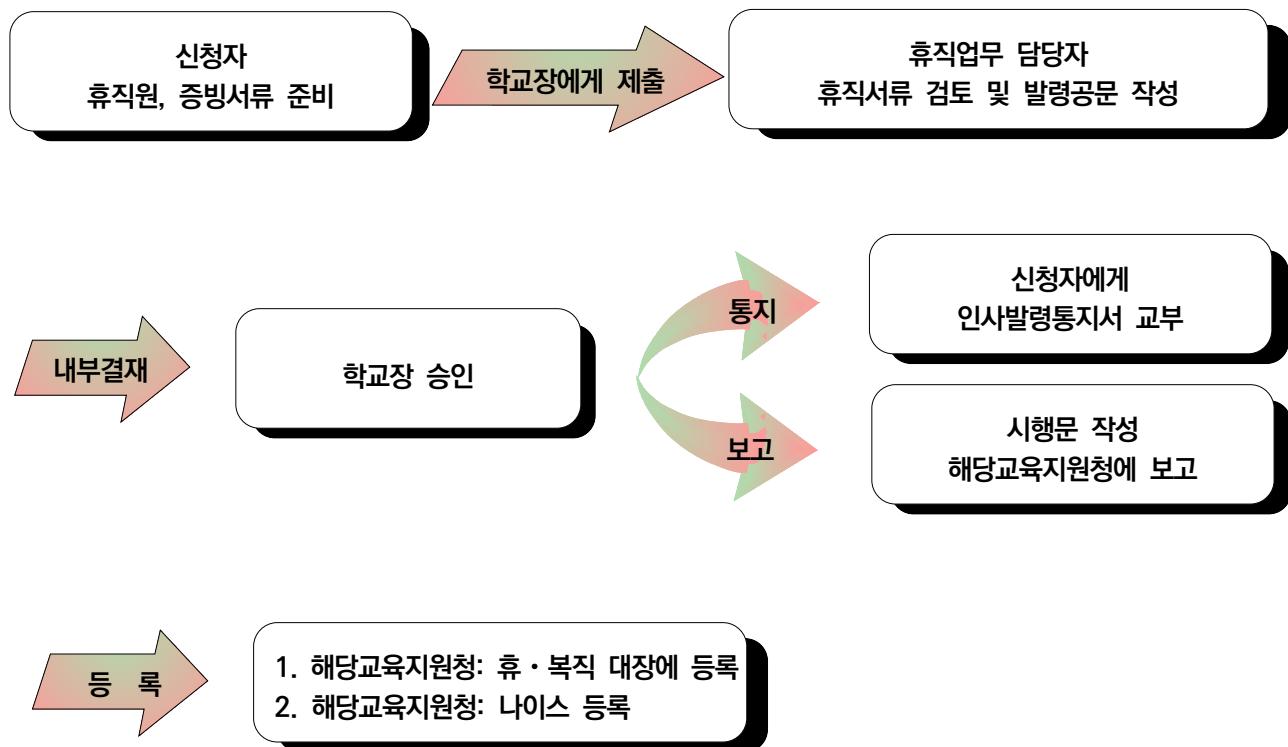


**불임****질병, 육아, 가족돌봄 휴·복직 처리 지침****I****처리절차****1. 배경**

「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」 개정(2009.05.01)에 따라, 2009년 9월 1일부로 학교장에게 재위임된 질병, 육아, 가족돌봄 사유의 휴·복직 발령 처리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자 함

**2. 처리절차****가. 흐름도**

- 요약: 휴직원(복직원, 휴직연장원)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·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